



개정 지방공기업법령 해설

- 지방공기업법 '02. 3. 25개정, 동법시행령 '02. 6. 19개정 -

사공 황

행정자치부 공기업과 제도팀장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우리사회의 크 나큰 변화를 주도해 온 규제완화와 중앙권 한의 지방이양 정책은 1999년 1월 29일 지 방공기업법의 일대변신을 가져왔고 이때 지방공기업 설립인가권, 정관변경, 예산승 인권 등을 대폭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였 다.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공 기업 자율권확대의 입법취지를 무색케라도 하듯이 구조조정으로 물러나는 공무원의 구제수단으로 지방공기업의 남설, 퇴직공무 원의 임·직원특채 등 파행적으로 운영하 는가 하면 지역경제의 활성화의 목적으로 출발한 제3섹터(민관공동출자법인)가 지도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운영부실 등이 나타 나 지방공기업의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3월 25일 지방공기업법의 개 정에 이어 얼마전 6월 19일에는 동법시행 령을 개정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책임성과 건

전성이 이전보다 크게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크게 나누 어 생각하면 지방직영기업의 운영기반 보 강, 지방공사의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 성·운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강화, 지 방공사공단 및 제3섹터의 건전육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지방직영기업의 운영기반 보강

가. 지방공기업 요금규정의 적용확대

법률 제2조(적용범위)제3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 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시행령 제22조의2(요금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도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3. 하수도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사업의 명칭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특정 공공수요를 필요에 따라 특정 개개인에게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원리에 맞추어 그 개인에게 상응한 비용을 부담케 함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비용부담은 총괄원가계산방식에 의하여 요금을 산정하게 되는 데 이러한 공공수요는 수도, 공업용수도, 하수도 등이 있다. 종전까지는 총괄원가계산방식에 의한 요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만 한정 적용하던 것을 이번 법령개정으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확대하여 공보에 게시함으로써 지방직영기업의 요금기준을 준용할 수 있게 하였다.

나. 지방공기업의 설치경영 한계**법률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설립 또는 경영함에 있어서 민

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저해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민선자치의 두드러진 현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부분이 지역경제활성화에 지방행정에 역점을 맞추다 보니,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의욕적으로 설립·경영하다 보니 민간기업과의 경합, 새로운 공공 독점기업의 등장, 환경훼손 등 부작용이 나타나게 됨에 따라, 자본주의의 지주인 자유시장의 원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친화적인 사업을 경영하도록 지방공기업의 설치·경영의 한계규정을 신설하였다.

다. 지방직영기업에서 일반회계가 부담할 경비확대**시행령 제5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1. (생략)
2. 당해 사업에만 적용되는 경비
 - 가. (생략)
 - 나. 하수도사업
 -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지방직영기업은 독립채산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자체사



업의 수익으로 충당하여야 하나 빗물은 가정오수, 산업폐수 등 하수가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빗물관거·빗물조정지·빗물펌프장 설치 등 빗물처리시설의 설치와 유지 관련경비 일체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였다.

라. 지방공영개발 이익금의 전출범위

법률 제17조(출자 등)

③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행하는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에 의하여 전년도 이익금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시행령 제14조의2(이익금의 일반회계 전출범위) 법 제18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다른 지방직영기업에의 경비지원
2.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의 사용

지방공기업의 이익금은 “이익금 자기처분”의 원칙에 의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그 사업에 쓰여지는 것이 맞다.

그러나 공영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토지의 공개념에 따라 택지조성이나 주택분양으로

벌어들인 돈은 개인에게 보다 공공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 위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그 이익금을 특별회계에서 그대로 썩히기 보다 일반회계(전주민수혜)로 돌려 생산적으로 쓰자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더라도 그 취지에 맞게 재해복구,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사업, 다른 지방직영기업에의 경비지원(일반회계에서 부담할 경비) 및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의 사용(경영수익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지방직영기업 요금산정방식 개선

법률 제22조(요금)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및 자본비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8조(요금의 산정방식)

- ①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영업비용에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자본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비용은 자기자본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한 금액에 지급이자를 더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적정투자보수율과 지급이자의 산정방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지방직영기업의 요금산정방식에 있어 대원칙인 영업비용과 자본비용을 합산하는 방식인 총괄원가보상원칙은 변동이 없다.

다만, 이를 구성하고 있는 자본비용의 산정방식이 관계전문가의 요청에 따라 타인 자본에 대한 지급이자외에 자기자본을 쓸 경우 그 기회비용인 이자(예금이자 수준)를 더 반영하게 되었고 그 기초가 되는 요금 기저의 산정시 기부채납재산, 농어촌국고보조금 등을 원가에서 제외하는 반면 비가동 재산에 대해서도 그 1/2을 반영토록 이미 확정·시행하고 있는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로 반영하지 않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토록 하였다.

예산의 이월제도는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산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종전에는 건설개량에 한하여 이월을 허용하던 것을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행하지 못한 경우 이월(사고이월)의 경우에도 일반회계와 같이 이를 허용하고 그 부대경비에 대해서도 이월을 허용토록 하였다.

2. 지방직영기업 예산제도의 개선

가. 예산이월제도의 개선

법률 제30조(예산의 이월)제1항

① 매사업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세출예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지방직영기업의 시설을 건설 또는 개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로서 당해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비
2. 당해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연도내에 집행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나. 회계결산서의 작성과 경영공시 시한 단축

법률 제35조(결산)제2항

② 관리자는 매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을 작성하고 이를 당해연도의 사업보고서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44조(경영공시 등)제2항

②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결산서 및 재무제표는 결산승인 후 5일 이내에, 기타서류는 공지사항이 발생한 때마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이를 공지하고, 주된 사무소에 2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서 작성기간은 예산 집행, 회계 등 처리방법의 전산화에 따라



결산·작성완료 기간을 3월에서 2월로 단축시키는 동시에 전년도 지방직영기업 경영성과 내용의 공시시기에 대해서도 지방의회의 결산승인 후 종전 30일에서 5일로 단축함으로 주민에게 신속하게 공시하여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하였다.

다. 기타 예산회계제도의 개선

시행령 제22조(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과의 관련비용의 정리)

지방직영기업이 소유하는

----- 자본적 지출로 정의한다. 이 경우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행령 제26조(현금출납사무 취급금융기관의 지정)

① 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출납사무의 일부를 행하게 할 수 있는 지정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1. ~ 2. (생략)
3.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4.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5.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

은행

법률 제48조(변상책임)

① (생략)

② 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나 분임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되거나 훼손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기타 지방직영기업 예산회계제도의 개선 사항으로는 몇 가지가 있다.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과의 관련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을 개정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던 것을 환경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현금출납사무 취급금융기관의 지정대상기관은 주민편의를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26조를 개정하여 금융기관과 체신관서외에도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기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직영기업의 물품관리기준의 설정에 관하여는 물품종류의 증가와 신상품의 개발로 일반회계와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어 시행령 제4조를 폐지하고, 지방재정법의 관계규정을 적용토록 하였다.

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나 분임자 등 회계책임자의 변상책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한 경우로 하고 그 입증책임은 면제키로 하였다.

3. 지방공기업의 건전화

가. 지방공사공단 설립타당성 검토강화

시행령 제47조(설립타당성 검토 등)

- ① (생략)
- ② 제1장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기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정관상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것
 2. 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전문인력을 10인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3. 최근 3년이내에 공기업 또는 지방재정관련 연구용역실적이 있을 것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 아니어야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검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사업별 수지분석
 3.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4.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5. 지역경제와 지방시정에 미치는 영향

시행령 제66조(공단의 설립운영) 지

방공단의 설립과 운영 제47조내지
-----의 규정을 준
용한다.

지방공사·공단의 설립의 경우에는 많은 경비가 소요되므로 사업의 적정성·경제성 등을 간과하고 설립하여 그 경영이 실패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큰 재정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미리 자격있는 전문기관의 타당성을 검토받음으로써 사전에 부실을 방지하고 이의 타당성검토를 할 전문기관의 자격과 검토할 내용을 규정하였다.

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사의 출자한도범위 규정

법률 제54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공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이 국내에 설립하는 법인이 출자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47조의2(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한도)

공사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이 국내에 설립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인의 자본금의 20퍼센트 이내
2. 공사의 직전연도말 자본금의 10퍼센트 이내



지방공사는 국가공기업보다 규모·자본 면에서 영세할 뿐만 아니라 독점도도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공사의 부실화를 막기 위하여 재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외국인의 기술투자를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지방공사 사례를 모델로 하여 출자할 외국법인 자본금의 20%이내에서, 출자하는 지방공사의 직전연도말 자본금의 10% 이내로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다. 사채발행기업의 경영개선계획 수립의무

법률 제68조(사채발행 및 차관)

①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 차관을 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군 및 자치구가 설립한 공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삭제)

시행령 제62조(사채발행)

① 공사는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

청서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 7. (생략)

② 공사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목적으로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영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⑤ 법 제6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사채 발행예정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당해 예정액을 합산한 부채총액이 자본총액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방공사·공단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사채발행을 억제하고 지방공사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경영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시·군 및 자치구가 설립한 공사가 시도지사에게 승인신청하는 소액의 사채규모를 10억원 미만으로서 당해 발행예정액을 합산한 부채규모가 자본총액의 1/3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범위를 정하여 사채발행승인신청에 따른 번거로움을 경감하여 지방공사의 재원운영에 탄력을 기하도록 하였다.

4. 지방공사의 임직원

가. 임 원

법률 제58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③ (생략)

④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제59조(임기 및 직무) ① 사장이 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사장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56조의2(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그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1.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인

2. 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3.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공사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퇴로 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그 지방의회와 공사의 이사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⑦ 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사장이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시행령 제56조의3(사장후보의 추천절



차 등) ① 추천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 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천된 후보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사장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없이 사장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지방공사·공단 임원은 부사장을 뺀 사장·이사 및 감사로 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종전에 조례로 규정하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격상시켜 규정하였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도 최초 구성시를 제외하고는 위원 7인을 단체장이 2명, 지방의회가 2명, 공사이사회가 3명을 추천하되 공무원,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사의 임·직원이 아닌 자로 전문가 중에서 추천토록 하고 특히 지방공사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지방공사이사회에서는 다른 기관보다 1인이 많은 수를 추천토록 하였다.

사장후보의 추천은 반드시 2인이상으로 하여 우수한 경영전문가가 많이 추천되도록 하였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적격자 선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적격자 모집·조사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임원의 자격

법률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로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임원의 결격사유는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임용후에 결격사유가 생길 경우에는 당연 퇴직토록 하였으나 퇴직으로 재임시 임원으로서 한 직무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도록 하였다.

다. 직원의 임면 및 처우

법률 제63조(직원의 임면)

- ① (생략)
- ② 공사의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법률 제63조의2(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공사의 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의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률 제63조의3(임·직원의 보수)

공사의 임·직원의 보수기준은 공사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률 제63조의4(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공사의 사장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명하는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지방공사의 직원은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임용하고 근무성적, 업무능력 등 객관적인 실적에 따라 승진시키도록 하였다.

지방공사의 발전과 임·직원 개개인의 업무능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하여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 또는 수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임·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경영실적을 보수에 반영하는 연봉제·성과급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임·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사사장을 대리하여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외의 출자법인(3섹타)

가. 제3섹타 설립타당성 검토

법률 제77조의3(설립)

-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추가로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출연의 타당성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7조의2(출자출연의 타당성 검토 등)

- ①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7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검토에 관하여는 제4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원, 관계전문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를 기초로 출자 또는 출연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출자하여 만드는 회사(3섹터)는 주식회사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2미만을 출자하나, 법령은 대부분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전국에 3섹터에 속하는 출자법인은 34개

나 있고 앞으로 더욱 늘어날 추세이지만, 이에 대한 규정은 많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3섹터에 관한 규정을 대폭 보강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회사에 대한 권리는 보유하는 주식회사의 주식지분에 따라 행사할 수 밖에 없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신분으로 경영참여도 제한적이다. 3섹터의 부실은 자본잠식으로 인한 손실외에 주식지분만큼 추가부담도 져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엄청난 재정부담을 안기게 된다. 이 때문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출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아래 출자출연심의위원회를 두어 반드시 출자출연의 타당성검토를 받게 하였다.

이 심의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관계전문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출연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된다.

나. 출자출연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법률 제77조의4(출자법인 등에 대한 지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에 대하여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출자한 회사중 자본금 또는 재산의 1/4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에 대하여는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와 관련한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게 하고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최소한 경영부실화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다. 사채발행 및 상환보증

법률 제77조의5(사채발행 및 상환보증)

출자법인이 사채를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차입(외국차관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사채 및 차입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보증은 재해의 복구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지분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 제67조의3(상환보증범위)

법 제77조의5 후단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제행사를 위한 시설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출자법인이 회사채로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상환을 보증할 수 있는데 상환보증범위는 그 출자지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다만, 재해의 복구·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의 조달, 국제행사를 위한 시설비의 조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자지분을 초과하여 보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출자법인에 대한 출자 등 제한

법률 제77조의6(출자법인의 해산 등)

① 출자법인의 경영이 부실하게 되어 당해 출자법인이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사람의 주식을 인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액이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체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주식을 처분하거나 당해 출자법인의 해산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7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출자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 해산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설립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



- 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
- 2. 5년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 3. 특별한 사유없이 2년이상 계속하여 영업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법률 제77조의7(준용규정)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에 대하여는 제55조·제64조·제71조·제75조의3 및 제75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자법인의 부실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출자법인에 자본잠식이 있거나 다른 사람의 주식인수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상한선인 자본금의 1/2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초과된 경우에는 소유주식을 처분하거나 당해 출자법인의 해산 등 필요한 조치를 강화토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끝없는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하였다.

또 이밖에 지방공사에 관한 규정인 제55조(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행사)·제64조(사업연도)·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제75조의3(공무원의 파견·겸임) 및 제75조의4(권한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6.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강화

가. 경영평가기관의 지정

법률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시행령 제68조(경영평가)제2항

- ① (생략)
 -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기관을 경영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 4. (생략)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 개개인 및 기관의 보수·성과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할 경우에는 같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기준이 단체간 상이할 뿐 아니라 평점에 있어서도 관대화의 우려가 높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종전에도 평가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더라도 행정자치부(구 내무부)가 이를 대행하여 왔다.

이번에 경영평가주체를 실제와 똑같이 행정자치부로 일치시켰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도 하여금

경영평가를 실시하게 하였다.

평가항목과 기준에 있어서는 연도간 단기간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를 전담할 기관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행정자치부장관은 경영평가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경영평가업무를 전담시킬 수 있게 하였다.

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시행령 제68조의2(지방공기업경영평가위원회)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경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경영평가기준의 설정
2. 경영평가대상의 선정
3. 경영평가기관의 지정
4.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행정자치부 차관보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의 부교수 이상 직위에 있는 자로서 공기업의 경영 및 그 밖의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 회계사 및 경영평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소지자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지방공기업경영평가위원회는 공기업 경영평가의 합리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을 보좌하여 평가기준의 설정, 평가대상의 선정·평가기관의 지정, 경영평가 결과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종전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훈령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이를 대통령령으로 격상시켜 운영하게 하였다.

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내용과 결과조치

법률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목표의 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공기업(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지방공기업에 한한다)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행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의 내용은 경영목표의 달성도·업무의 능률성·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등에 관한 것으로 평가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경영목표, 조직관리, 사업수행, 고객서비스 등 경영개선에 관하여 적절한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단한 경영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7. 부정당업자 제재 등 기타

법률 제64조의2(회계원칙 등)

- ③ 공사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79조(보고)

- ① (생략)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 4. (생략)
- 4. ~ 2. 법 제77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법인·출연법인의 설립사항 및 추가출자·출연사항

법률 제83조(벌칙적용의 의제)

공사와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령 제80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8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공사와 공단의 정관상 과장 또는 팀장이상의 직원을 말한다.

지방공사·공단이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부정·부당거래, 낙찰담합, 허위서류 작성 등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이 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와 같이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자로 조치할 수 있게 하였다.

지방공기업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지도·감독에 필요한 각종 보고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해

당보고를 하도록 명정하고 형법상 수뢰죄(제129조), 제3자 뇌물죄(제130조), 수뢰 후 부정처사(제131조) 및 알선수뢰(제132조)에 대하여는 정관상 과장 또는 팀장이상의 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도록 규정하였다.

지방공기업법은 '69. 1. 29일 이세상에 태어난 이래 80·90년대를 거쳐 크게 발전 개선되어 왔다.

1999년 지방공기업법령 개정의 특징이 지방공기업의 자율성 확대인 반면 이번 개

정은 지방공기업의 책임성과 건전성의 강화라는 것이다.

지방공기업의 자율성만 확대되고 책임성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지방공기업의 부실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주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지방공기업은 그 설립취지와 같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여야 하는 것이 바로 지방공기업법의 존재의 소이라고 할 수 있다. 